

1. 의결주문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스마트도시법」개정에 따라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 관련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
2. 평가의 범위, 대상
3. 평가기준, 평가지표 및 평가배점
4.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작성
5. 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여부 등에 관련된 사항
6. 그 밖에 평가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받은 사업시행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구성·운

영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 실시) ①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는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평가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성과평가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사안을 고려하여 자체검토 또는 위원회의 재평가를 거쳐 확정한다.

제10조(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결과를 법 제36조

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7조(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에 필요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 1. 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2. 평가의 범위, 대상 3. 평가기준, 평가지표 및 평가배점 4.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작성 5. 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여부 등에 관련된 사항 6. 그 밖에 평가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받은 사업시행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8조(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 실시) ①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는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

<신 설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

연 락 처

(044) 201 - 4842

<신 설>

거쳐 평가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성과평가결과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사안을 고려하여 자체검토 또는 위원회의 재평가를 거쳐 확정한다.

제10조(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결과를 법제36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.